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년 2월 13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1월 23일, 정재동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23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5년 2월 13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현행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」에 반영되어 있는 금천구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기준을 이 조례로 변경하여 규정하고, 보조금을 지원하는 장애인체육단체 등에 대한 지도·감독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사회 장애인체육을 진흥하고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금천구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기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(안 제6조 신설)
- 2) 보조금을 지원하는 장애인체육단체 등에 대한 지도·감독 근거 조항을 신설함(안 제8조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- 현행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」에 명시되어 있는 금천구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이 조례로 변경하여 규정하고,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

2) 주요 내용

- 가) 금천구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기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(안 제6조 신설)
 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에 따라 장애인체육회 지원 근거를 마련함
- 나) 보조금을 지원하는 장애인체육단체 등에 대한 지도·감독 근거 조항을 신설함(안 제8조 신설)
 -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장애인체육단체 등에 지도·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의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

3) 검토 의견

- 본 개정안은 장애인체육회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